

정책분석과 동향



“보호대상아동” 개념의 재검토: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
류정희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이상정

“보호대상아동” 개념의 재검토: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¹⁾

Re-examining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Seeing Them as Subjects of Self-reliance, Not as Passive Objects of Protection

류정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아동복지법」상 위기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 성장 및 발달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이 가진 모호성으로 개념 사용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개념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보호의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의 규모와 실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근거 기반 아동보호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의 제약이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공급자 중심의 “대상” 아동 구분에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단순화, 명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지원대상 및 보호대상아동을 통합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움필요아동”으로 단순화하고, 현재 가정내, 가정외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아동기본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아동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권리보장원, 2022. 7. 14.)을 개최할 계획이며, 2023년 아동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기본법」의 제정은 그동안 보호의 대상으로 객체화되었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바로 세우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기본법」의 도입을 계기로 일련의 아동 관련 법 개정이 연동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동안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되었던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 다양한 성장 및 발달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에 대한 규정은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대별된다. 첫째, 이러한 개념은 보호 또는 지원의 “대상 아동”이라는 명칭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바처럼 아동을 서비스 공급의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보호와 지원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보호대상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실천의 현장에서 “보호아동” “보호필요아동” “요보호아동” “학대피해아동” “가정외보호아동” 등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발달위기의 아동을 포괄하는 “취약아동” “위기아동”의 개념과도 혼용되고 있다. 이처럼 보호대상아

동을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공표하고 있는 승인통계인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집계하여 통계청이 매년 공표하는 보호대상아동통계(보건복지부, 2022. 5. 31.)는 현재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Looked after Children)을 의미하며,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보호아동” 통계라고 규정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먼저 「아동기본법」의 제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계기로 다양한 발달의 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보호위기의 아동을 둘러싼 개념적 혼란의 기저에는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와 이해의 자의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보호위기의 아동에 대한 개념적 혼란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규모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근거 기반의 아동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보호위기 아동에 대한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아동에 대한 대상화와 서비스의 불연속성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기초한 법적 개념이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1)보호자의 부재, 2)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 3) 양육 능력 부재의 상황에 놓인 아동을 의미한다(그림1 참고). 이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은 친생부모 및 원가정을 통한 아동 양육 및 보호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보호의 의미는 엄밀하게는 가정외보호(out-of-home care), 즉 사회적 보호(social care)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보호대상 아동 중 실제로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중)아동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혼란의 근원이다. 이러한 가정외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아동보호체계의 대상이 되어 가정외보호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바로 지금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children in out-of-home care)은 아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지금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중)아동”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부터 출발한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아동 사이의 개념적 혼란의 결과, 많은 경우 보호대상아동이라 부르고, 보호 중인 아동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중)아동 사이 혼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이다. 최근 발표된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통계’에서는 보호대상아동통계를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의 수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2021년 신규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의 수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그들 중 가정외보호를 받게 된 아동의 수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통계는 당해년도 “보호되고 있는 아동(Looked after children)”, 즉 ‘보호(중)아동’에 대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는 보호지원대상아동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아동은 아동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대상 아동의 개념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7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의 지원대상 선정 근거, 제41조 자립지원정책의 대상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원대상아동의 아동복지법상의 활용 예는 지원대상 아동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강화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상 취약계층 통합 서비스의 지원대상 아동 규정(제37조)은 가정내에서 생활하는 취약

위기아동을 의미하는 반면, 아동자립지원 추진협
 의회(제41호) 지원대상아동은 실제로는 보호종
 료아동(보건복지부, 2021. 7. 13.)²⁾을 의미하여,
 원래의 지원대상아동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

표 1. 보호 필요 아동 관련 아동복지법상 근거 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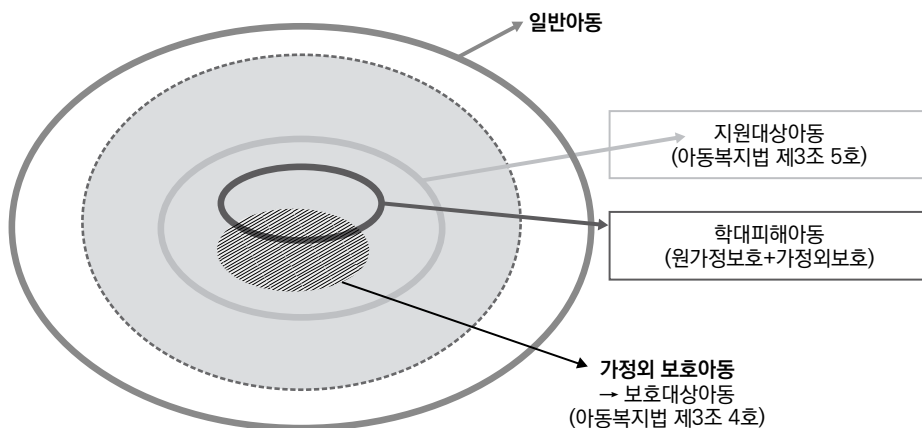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6. 30.).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_iSeq=224935&efYd=20210630&ancYnChk=0#0000에서 2022. 7. 12. 인출.

그림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위기도별 범주구분



자료: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3 수정 보완.

2) 보호종료아동은 2021년 7월 13일 이후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복지부, 2021.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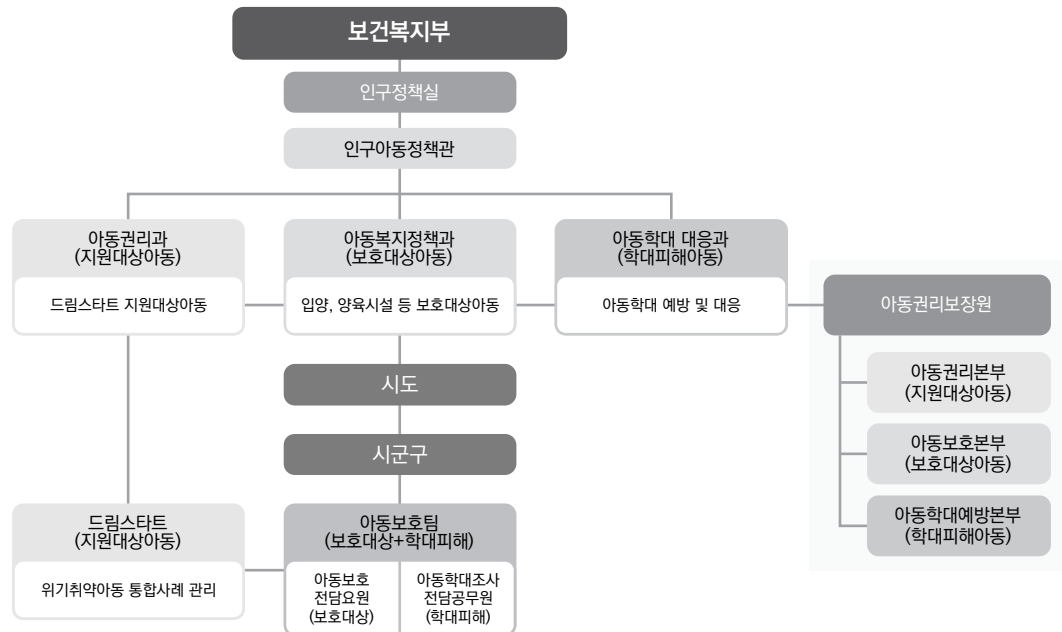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호대상과 지원대상의 개념 및 대상범주의 차이는 매우 모호하며, 그 결과 지원대상아동의 개념은 아동보호 실천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규정은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중심의 공급자 행정편의적 차원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가 크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아동을 학대피해, 보호대상, 지원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공급주체별 분절적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

동보호체계의 게이트웨이에서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인지 가정외보호아동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공급자가 대상자별로 이미 나누어 있는 구조에서는 학대피해아동, 가정 해체에 의한 가정외보호대상아동으로 나누어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을 중심으로 고려하면 지원대상과 보호대상은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의 수준은 가정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원대상”과 가정외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의 경계를 넘나들 수

그림 2. 아동의 범주구분과 보건복지부의 소관부서



자료: 저자 작성.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원과 보호의 대상을 가리고 공급 부서 간 견고한 칸막이로 인한 연계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구분은 아동이 받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이분화하고 서비스의 불연속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드림스타트의 지원대상아동은 가족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면 가정외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드림스타트의 지원대상과 아동보호팀의 보호대상으로 구분된 두 개의 사례관리체계의 불연속성 문제가 현장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지원대상아동은 만 12세 이하의 빈곤 아동이기 때문에, 빈곤과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학대 피해 경험을 가지고 원가정에서 학대 행위자와 분리되지 않은 보호대상아동은 드림스타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3. 아동보호와 아동보호체계,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아동의 개념 사용의 혼란은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로부터 초래되었다.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가정외의 사회적 양육 및 보호(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을 모두 포괄)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아동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학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위기 및 부모의 부재 상황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그러나 과거 요보호아동으로부터 파생된 아동보호의 개념은 고아원 등 양육시설 등을 통한 협의의 가정외보호 개념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 2000년대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 안전에 대한 공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대응체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아동보호는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동보호는 때로는 1) 가정의 보호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 아동의 보호로, 때로는 2)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보호로, 때로는 3) 모든 종류의 보호위기에 노출된 아동의 보호로 임의적으로 제각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아동보호의 개념상 혼란으로 인하여 학대위기 상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는 학대피해아동보호로만 목적과 기능이 한정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아동학대대응체계” 및 “아동학대예방체계”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적 혼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한다. “아동보호”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고 제3장 제1절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 즉 가정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에서 사용되는 아동보호의 개념은 이와 같은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아동보호이며, 이는

표 2.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체계 관련 규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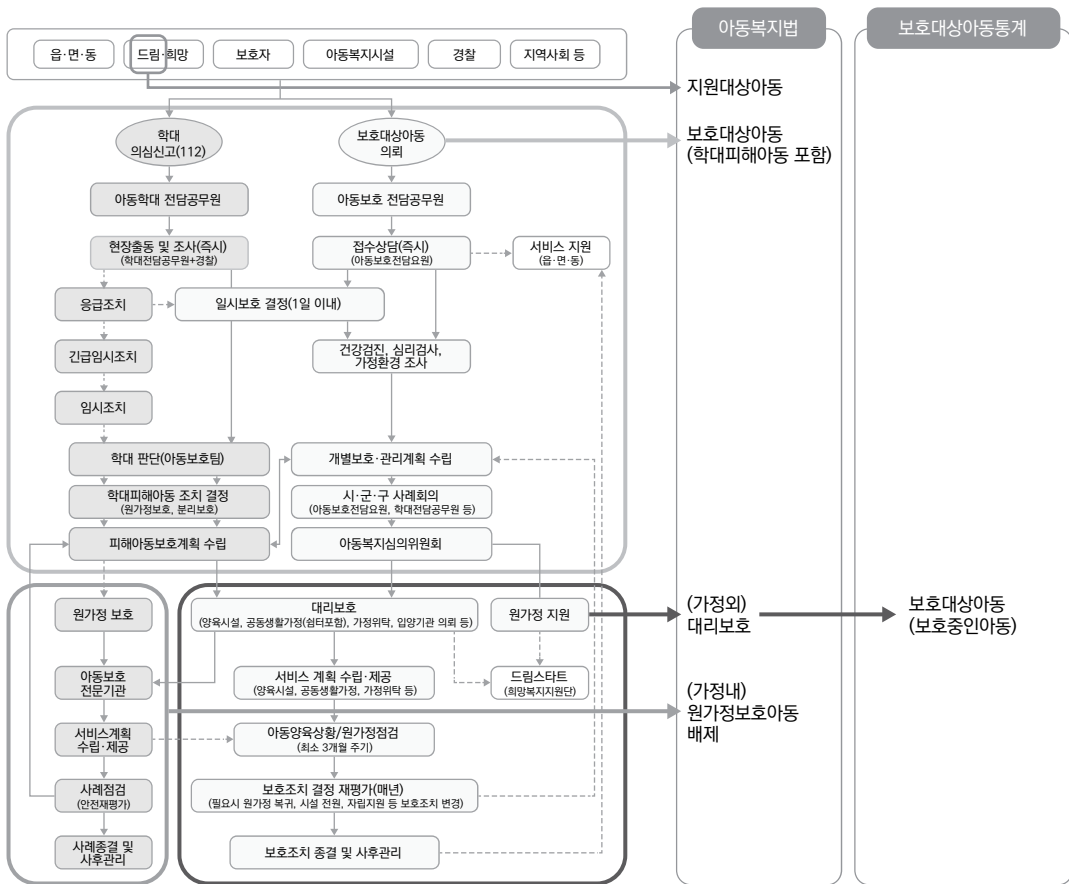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료: 아동복지법. (2021. 6. 3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_iSeq=224935&efYd=20210630&ncYnChk=0#0000서 2022. 7. 12. 인출.

그림 3. 보호대상아동과 아동보호체계



자료: 저자 작성.

가정의보호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반면, 아동 복지법상의 아동보호는 제15조 4호 5항의 아동 보호 사각지대 발굴 관련 조항에 이르면 e아동행 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아동보호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의 개념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

“아동보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혼란은 아동 보호체계 흐름도(그림 3)를 통해서 보다 극단적으로 확인된다.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아동은 학대피해아동을 포함하나 아동보호체계의 진입 관문에서 보호대상아동은 학대의심아동과 구분되어 있다. 즉, 법적 규정상 보호대상아동과 아동 보호체계에서 사용되는 보호대상아동 개념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4. 아동 중심 보편적 아동보호의 개념 재정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

앞으로 예정된 2023년 아동기본법의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의 아동보호를 둘러싼 공급대상으로서 아동의 개념, 지원 및 보호체계의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립을 위한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아동범주의 재개념화 방향과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먼저, 아동보호의 개념은 과거 가정외보호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던 아동보호의 개념을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학대, 가정 해체 등 다양한 아동 발달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로서 아동보호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과거 요보호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에 대한 낙인감(stigma)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성장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보편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범주의 재개념화 작업은 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이 받는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구분되는 현행 “대상아동” 중심의 범주 구분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심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아동보호의 개념 재정립은 지자체의 아동보호팀이라는 게이트웨이에서 처음부터 구분되어 진행되는 아동보호의 흐름과 체계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의 검토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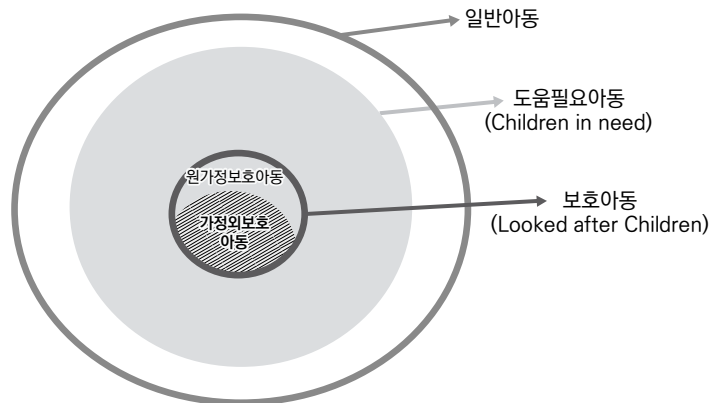
셋째,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 수준에 따른 아동의 범주화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조작성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상아동 개념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아동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서비스의 잠재적인 대상이 되는 아동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아동보호체계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보호를 필요

로 하지만 보호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구분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5. 31.)했으며 이는 2020년 4,120명 대비 11.3%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만 18세 미만 위기아동·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전체 아동의 0.05% 수준으로 파악된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외에 가정외보호를 필요로 했으나 보호서비스를 받지 않은 아동, 보건복지부 외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등의 가정외보호조치를 받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범주의 구분은 명확하게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와 누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위기 상황에 따른 아동범주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 1) 아동보호는 누구나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2) 그들 중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도움필요아동(Children in need)”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잠재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의 규모 및 실태 및 현황에 대한 파악과 정책 개입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당해년도 기준 다양한 유형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조작적 개념정의

그림 4. 아동보호체계의 재개념화 방안(예)



자료: 저자 작성.

가 필요하다.

- 3)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움필요아동”은 학대, 폭력 및 돌봄자의 부재 등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보호위기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보호(중)아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가정내 보호(학대피해아동 등; Children-in-home services)와 가정외보호(학대피해아동, 무연고아동, 돌봄자부재아동 등; Children-out-of-services)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원가정보호아동”과 “가정의 보호아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5. 나가며

이미 있는 것들 사이의 낯은 질서와 관계 방식을 재규정하는 작업은 매우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랜 관계와 질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덧붙이고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아동보호의 우산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렇게 덧대어진 패치워크로 연결된 우산의 틈새가 커다란 구멍이라면 그리고 그 밑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성장·발달과 생존의 위기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전면적으로 우산을 수선하고 키워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한 작업이 아동기본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의 출발점에서 “아동보호”

개념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기본적인 방향성과 원칙은 아동보호의 개념을 기존의 가정외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보호대상아동)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잠재적이고 광범위한 위기의 아동을 포함하는 보다 보편적인 권리의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아동보호의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위기아동 범주구분의 모호성과 공급자 중심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기아동의 개념적 정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호대상아동보다는 도움필요아동의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아동보호서비스(학대, 가정외, 가정내 보호서비스를 포괄)를 받고 있는 아동의 개념을 정립하여 보호아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동과 보호의 개념이 구체적인 현실 정책과 실천의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의 게이트웨이에서 이분화된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서비스의 구분을 통합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차별적이고 분리된 구조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조사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과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를 분절화하는 이분법적 구조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문제는 대상을 지원대상-보호대상(가정외)-학대피해아동으로 구분하고 그 주무과가 각 대상아동을 위한 정책과 업무 가이드라인만 관리하는 분절적인 중앙의 구조

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 작업과 같이 갈 때 가능할 수 있다. 복지부의 아동주무 3과(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아동권리과)는 모두 보편적인 의미에서 아동보호의 부분을 담당하는 과이며 보다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틀 안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한 아동보호서비스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로 동행.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425에서 2022. 7. 14. 인출.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2. 5. 31.). **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644에서 2022.7.12. 인출.
-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6. 30.).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935&efYd=20210630&ancYnChk=0#0000>에서 2022.7.12.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2022. 7. 14.). **2022년 아동기 본법 제정 추진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제1회 개최**.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nttSn=3966&bbbsId=1021&mi=1053>에서 2022. 7. 14.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7. 1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

Re-examining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Seeing Them as Subjects of Self-reliance, Not as Passive Objects of Protection

Ryu, Jeong-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ith the social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as an opportunity, a re-examination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ren at risk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s necessary.

Under the 「Child Welfare Act」, children who experience crises in the process of growth and development are defined as “children who are eligible for protection” and “children who are eligible for suppor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using the concept of a child subject to protection as a concept of “child currently receiving protection” and “child in need of protect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s a result, there were limitations in evidence-based child protection policies due to th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 in blind spots in the child protective system. This paper proposed to simplify and clarify the definitions of children at risk. The basic principle of redefining children at risk is shifting the paradigm of conceptualizing children at risk from a provider-centered concept, such as “targeting” children to a child-centered classification, such as “children in need”. It is also needed to integrate the concepts of “protection” and “support” into “children in need” who need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clearly redefine the children currently receiving in-home and out-of-home protection services as “Looked-after children”.